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78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1. 개정이유

코스피200 장내파생상품의 거래승수 인하(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 방안 관련)에 맞춰 동 상품의 미결제약정 대량보유 보고대상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임

2. 주요골자

가. 미결제약정 대량보유 보고 대상 조정(안 제6-29조)

코스피200 장내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 대량보유 보고의무 대상과 변동보고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 02-2100-2655, FAX: 2100-2648, e-mail: skchoi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